

『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·사무처리 등(안 제3조)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사무 지원 및 준용(안 제4조)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인력 등 지원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침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처리할 사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그간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 제30조의2를 근거로 지원해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시화함으로써 관련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 현재 전국 67개 시·군·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됨.
-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